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10월 2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4년 10월 14일 회부
- 상정일자: 제298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4년 10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환경과장)

#### 가.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현장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조례로 위임된 적용 예외 사유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욱)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4. 10. 2.
- 회부일자 : 2024. 10. 14.
- 상정일자 : 2024. 10. 14.

### 2.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현장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조례로 위임된 적용 예외 사유 규정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서 안전기준 및 적용대상을 정하되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

### 나. 입법의 취지

-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현장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되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 작업원칙 적용 예외 사유 >

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중지 및 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4.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안전 기준을 명시하고 우리 군 업무 환경에 맞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의거하여 규율되었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참고자료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유형별 현황<sup>1)</sup> >

구분	계	교통사고			청소차량 사고							작업자 사고					기타
		소계	피해	과실	소계	끼임			차량에 부딪힘	차량에 깔림	차량에서 떨어짐	소계	베임	넘어짐	물체에 부딪힘	질환	
						적재장치	상차장치	기타									
누적	2,109	271	101	170	488	58	27	64	55	25	259	1,297	207	511	171	408	53
'18년	295	26	17	9	83	13	9	11	7	5	38	178	22	64	20	72	8
'19년	388	55	22	33	91	12	5	9	11	6	48	236	42	95	35	64	4
'20년	427	53	24	29	109	12	2	16	10	5	64	254	50	89	32	83	11
'21년	471	51	12	39	112	13	8	17	17	2	55	295	51	118	44	82	13
'22년	528	86	26	60	93	8	3	11	10	7	54	334	42	145	40	107	15

1) 2023년 환경미화원 주간작업에 따른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정혜경 의원실

[붙임 2]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9
----------	-----

제출년월일 : 2024.10. 2.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서 규정한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강화하고,  
안전기준 중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원칙 등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기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조례로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청소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안전기준 준수조항 신설(안 제6조의2제1항)
- 나.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안전기준 중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인 1조 작업원칙 예외사유 규정(안 제6조의2제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7. 28. ~ 2024. 8.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068호, 환경과-4129(2024. 7. 23.)호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267(2024. 7. 18.)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267(2024. 7. 18.)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286(2024. 7. 22.)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4432(2024. 9. 13.)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작업의 원칙 또는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의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준수 및 폭염,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상차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집게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4.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 폐기물관리법 >

### 제14조의5(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 다. 청소차량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의 배출가스 배기관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전원표
연락처	(033) 330 - 2340